

수원지방법원 2017. 11. 24 선고 2017나9166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A

피고, 항소인 B

변론 종결 2017. 10. 20.

판결 선고 2017. 11. 24.

제 1 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. 10. 27. 선고 2015가단6724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여주시 C 대 647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 지상 별지 도면 표시1, 2, 3, 4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이동식 컨테이너 15㎡, 같은 도면표시 5, 6, 7, 8,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4) 부분 이동식 컨테이너 15㎡를 각수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라.

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15. 4. 14. 경매로 취득한 소유자이다.

나. 이 사건 토지 위에는 피고 소유의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이동식 컨테이너 15㎡, 같은 도면 표시 5, 6, 7, 8,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 이동식 컨테이너 15㎡(이하 '이 사건 컨테이너'들이라한다)가 놓여져 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들을 수거하고,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(피고는, 원고가 이 사건 컨테이너들을 훼손하여 재물손괴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주거용 컨테이너와 가재도구 일체가 행방불명인 상태여서, 이 사건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 이 사건 컨테이너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일부가 손괴된 것으로 보이고,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로 확정된 다음 원고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 1동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체동산경매를 신청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, 피고가 주장한 사실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, 이 사건 청구의 당부에는 영향이 없다).

3. 결론

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

재판장 판사 김래니, 판사 박성민, 판사 차주희

별지도면

